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ypes of Plagiarism and Appropriate Citation Practices of Writing Research Papers

곽 동 철(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 론 | 4. 표절 방지와 올바른 인용 방식 |
| 2.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문제점 | 5. 결 론 |
| 3. 학술논문 작성의 인용 방식 비교 분석 | |

초 록

최근 국내에서 학술논문의 발표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표절시비는 학계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통해 문헌정보학적 시각에서 학술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인용과 표절에 대한 정의를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학술논문에 있어서 표절의 유형과 문제점 등을 다루고, 둘째,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의 인용 방식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표절에 대한 대응 및 올바른 인용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Recent controversies surrounding plagiarism of research papers submitted to domestic scholarly journals and dissertations lead to scrutiny in the level of scholarly community and that of government as well. Particularly the latter is beginning to deal with the problem as a matter of establishing academic and research ethics at international level. This study looks into the notions and definitions of citation and plagiarism along with some basic issues around them in academic and research writings. This study is done in the perspectiv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the following three aspects are investigated and analysed in detail a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types and related problems of plagiarism are closely examined. Second, citation styles in writing academic and research papers are compared and analysed. Finally, deterring and preventing measures against plagiarism and appropriate citation practices are suggested.

키워드: 연구윤리, 학술논문, 표절, 인용방식, 학술적 글쓰기

Research Ethics, Scholarly Journals and Dissertations, Plagiarism, Citation Styles,
Academic and Research Writings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전국국공립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윤리 정립 방안 학술회의(2007.5.31. 전남대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wackdc@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8월 17일

제재확정일자 2007년 9월 27일

1. 서 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윤리’, ‘연구부정’ 및 ‘표절’의 문제가 학계나 문화계를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 하였고, 여전히 다양한 논의들이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금년 5월 31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전국국공립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전남대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윤리 정립 방안”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자연과학 중심의 연구윤리 관련 논의와 관점을 달리하여, 처음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다른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하부터는 ‘학술논문’으로 통칭하여 기술함)의 연구윤리나 연구부정행위 및 문화계의 표절과 관련하여 신문이나 방송에서 빈번히 다루어지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자기표절을 포함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이란 부분은 상대적으로 타 학문 분야보다는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분야와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선진국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절 방지와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Jackson 2006, 418-428).

일반적으로 교수, 연구원, 학생 등과 같이 학술적 글쓰기를 직업이나 의무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용’과 ‘표절’ 문제를 생각하고 고심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에서 인

용과 표절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다. 인용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였거나 작성한 내용을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즉,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용은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 이용하거나 인용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사용하는 것이다. 즉, 표절은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용과 표절은 이론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실제 발표된 글에서 이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학술논문에서 인용은 학문발전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이어주는 기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학문 분야 이건 학술논문에서의 인용은 해당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성경이나 학술논문 및 고전 등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인용 사례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오기도 하고,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도 하며, 논증의 타당성 또는 권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학술논문에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많이 인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누가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였고, 그런 점에서 나의 연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차별화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인용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학술논문에서의 표절은 해당 학

문의 발전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계나 사회에서 학술논문의 표절과 관련된 시비나 법적 공방이 심심찮게 언론 등을 통해 부정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학술논문의 발표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표절 시비는 학계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통해 문헌정보학적 시각에서 학술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인용과 표절에 대한 정의를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논문에 있어서 표절의 유형과 문제점 등을 다루고, 둘째,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의 인용방식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표절에 대한 대응 및 올바른 인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문제점

2.1 표절에 대한 다양한 정의

일반적으로 표절은 사람들의 창작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음악, 미술, 문학, 드라마, 건축, 게임, 광고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표절(剽竊; plagiarism) 문제가 연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표절(plagiarism)이란 용어는 납치자(an abductor)

를 뜻하는 'plagiarius', 훔치다(to steal)를 나타내는 'plagiai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을 함부로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며, 학술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2005). 국어사전에서도 표절을 "남의 시가·문장 등의 글귀를 훔쳐서 자기 것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민중서림편집국 2003). 학술연구에 있어서 표절을 포함한 연구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생명윤리이고, 둘째는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서 위조, 변조, 표절을 포함하는 연구 부정행위이다.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끔씩 사회문제로 보도되는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나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적절하지 못한 저자표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부적절행위도 연구윤리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다(정일섭 2006, 55-56).

여기서 본 연구의 키워드인 표절과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2006. 6. 16 제정, 규칙 제1563호) 제2조에서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에서 위조와 변조에 대한 정의와 함께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 부적절행위'는 "당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

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2006, 78-79). 이러한 정의 및 인식은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많은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실태를 고찰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인재 2007).

또한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표절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속한 행보를 보인 한국행정학회는 표절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표절규정 제1조에서 “표절이란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06, 78). 여기서 지적재산이란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유재원 외 2005, 353). 이와 함께 동 규정 제2조에서 표절의 대표적 유형으로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영어사전 온라인판(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OED Online)에서도 표절(plagiarism)을 “표절하는 행위나 관습, 즉,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아이디어의(문학적, 예술적, 음악적, 기계적 등) 표현을 자기의 것으로 부당하게 전유 혹은 절취 및 발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Oxford English Dictionary 2003). 또한 미국 팬실베니아주립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인 시몬즈(Simmonds)는 표절을 단순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저작을 취하여, 적절하게 인정하거나 문헌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속여 넘기는 것”이라고 하였다(Simmonds 2003).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의 퍼듀대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단어나 생각을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 아니든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The Owl At Purdue 2006). 이와 더불어 학술논문 작성자가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이중)게재하거나 분리게재(살라미논문)를 하는 경우, 또한 자신의 글을 스스로 사용하고 인용 표시를 누락한 자기표절의 경우, 그리고 학술논문은 풀과 가위만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짜깁기한 경우에 아무리 인용 표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견해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광의의 표절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정진근 강원대 교수(법학)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논문에서, 표절을 좁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넓게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인 양 이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표절문제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공유영역에 속하게 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과거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는

소위 자기표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정진근 2007, 58-59).

이러한 표절은 학술논문 작성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학자의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국가들의 표절에 대한 사전적 정의나 관련 단체의 인식은 부정적이면서 단호하고, 다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학술논문에서 인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임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학술논문 작성자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면,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사용정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학술논문 작성자가 원래의 저작자인 것처럼 도용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용과 표절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사용정보의 출처 및 저작자 표기에 대한 고의적 누락 여부이다. 이러한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의 표절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자세는 국가에 따라, 학문 분야마다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2.2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표절은 선진국의 경우에 크게 학생 표절과 학자 표절로 나누어 교육되거나 설명되고 있다. 그러한 상당 부분은 학생 표절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자나 학자의 표절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표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학생이 자라

나면서 연구자나 학자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에서의 심각한 표절 문제가 해결되어야 올바른 글쓰기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나아가 연구윤리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학생 표절 문제는 가급적 논외로 하고 연구자와 학자의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 표절 문제로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최근 표절문제와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 적지 않은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 뉴스전문검색에서 최근 1년간 신문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대상을 '표절'이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실시하면 그 결과로서 181건의 신문기사 내용들이 출력되고 있다(<http://kinds.or.kr/main/search/searchresult.php>). 이를테면, 국책연구기관장의 교재 표절의혹, 대학에 표절방지 강좌 첫 개설, 연구윤리 교육에 2억원 지원, '대필논란' 대학총장 사퇴, 수강생 110명 중 39명 판박이 과제 … 교수도 깜짝 놀란 리포트 …, 저널에 잇단 보도 국내 연구윤리 …, 미 '표절 적발사이트' 도마위에, '표절검사' 시달린 미 고교생 "내 저작권도 소중" 소송제기, '대학 연구윤리' 기강 다잡는다 … 과기부, 검증시스템 점검, 표절한국 바로 잡자, 교육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논문표절사건, 논문표절의혹 교수 사설상 징계, 제자논문 표절교수 적발, 학위논문 대작·대필 풍조, 육스포드대 학생들 논문 표절 횡행 등이다.

이처럼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표절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절에 대한

학계 내부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이 표절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디까지가 표절인가에 대해 학문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전술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윤리 정립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곽동철 2007, 43-44) 및 한국행정학회의 ‘행정학회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절의 유형(유재원 외 2006, 353)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즉, 다음의 표절 유형들은 연구 부정행위는 물론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들까지 포함시켜 나열한 것이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학술논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경우.
- ② 사용정보의 출처에 대한 부정확한 인용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인용한 자료의 서지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본문에는 인용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지만 참 고문헌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포함).
- ③ 사용정보의 출처는 제시하지만 인용부호 없이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④ 원저자가 작성한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거나 그대로 또는 종합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공동저자로 발간하는 단행본이나 발표하는 논문.

(석·박사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생·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 포함.)

- ⑤ 공동으로 집필한 학술논문에 저작자를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⑥ 원 출처를 인용한 제2차 출처(secondary source)로부터 원 출처에 제시된 글의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제2차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 출처만 제시하는 경우.
- ⑦ 논문 심사자가 제시한 비평이나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원고(manuscripts)를 수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⑧ 출처를 인용한 경우라도 본인의 저술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빌려온 경우.
- ⑨ 자기표절(self-plagiarism)로 간주되는 이미 출간된 본인의 저술을 책으로 엮거나 타 출판물에 출판하면서 저널의 편집자나 독자들에게 중복 출판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 ⑩ 저자가 소속 대학연구소 논문집에 투고한 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전문 학술지에 다시 투고하여 게재하거나 동일한 논문을 2개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하는 경우.
- ⑪ 하나의 학위논문이나 보고서를 2편 이상으로 분리하여 학술지에 각각의 학술논문으로 투고하여 게재하는 것.

이처럼 표절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관점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 표절로 간주하거나 전부 또는 논외의 사항까지도 포함하

여 다루기도 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표절과 연구윤리'란 논문에서 표절의 유형을 크게 (1)타인의 글을 적절한 인용이 없이 사용하거나, (2)이미 출간된 자신의 글을 일부 인용이 없이 사용한 경우(자기표절), (3)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을 다시 또 다른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중복게재), (4)인용문을 재인용하면서 직접 원전에서 인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비윤리적인 인용)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신광영 http://www.krf.or.kr/KHPapp/board_tpl/noti_bodo.jsp?bbs_seq=628&sub=menu_08).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표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학술논문의 표절과 관련하여 교수신문에 게재된 기사로서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표절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분석된 것으로 여겨진다(최장순 기자 2006).

첫째 유형은 '개념 표절'을 들 수 있다. 각 학문마다 분야별로 핵심을 이루는 개념들은 특정 저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여기서 그 개념이 특정 저자에게 고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개념들이라면 출처를 모두 밝힐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학술논문 작성자가 같은 개념을 이름만 바꾸어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 자신만의 '독창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개념 표절'에 대해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는 "적발의 대상이 되는지 애매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을 쓰는 경우, 독창성을 요구한다고 보기 힘들어 표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학술논문에서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과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애매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둘째로는, '학술논문의 '논리 구조 및 분석 체계를 표절'하는 경우이다. 한 논문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논리 구조 및 분석 체계의 형식이 다른 논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면, 표절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학술논문에서 핵심이 되는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표현만 바꾼다거나, 기존의 분석 체계를 새로운 대상에 적용시켜 새로운 논문인 양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가령 설문조사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 다른 대상에 적용시킨든지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중학생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의 설문 조사 문항을 그대로 가져와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도 하였다. 즉, 이 사례에서는 분석 대상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설문 문항을 대상에 맞게 만들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 경우에도 표절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표절이라고 단정을 짓을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강창원 카이스트 교수(생명과학)는 "예를 들어, 식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실험을 그대로 동물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실험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다르면 새로운 연구로 간주되

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와 같이 기존의 실험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킨 연구는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유형으로는 '부적절한 혹은 아주 이상한 인용'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학술논문을 형식상으로 보기에는 인용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절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즉, 학술논문 작성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차 문헌에 의존했으면서 1차 문헌을 참고한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술논문 작성자가 스스로 1차 문헌을 참조한 것이라고 밝히면 표절로 판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재인용'을 통해 2차 문헌과 1차 문헌을 동시에 기재하지만, 문제는 1차문헌의 출처만을 밝히는 경우에 표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박현호 성균관대 교수(국문학)는 "이러한 사례는 왕왕 있으나 증거를 갖춘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박 교수는 "인용문의 출처가 공중에 떠버린 경우"를 예로 들면서, 특정 논문에서 1차문헌의 출처를 명기한 부분에 오류가 있어 도저히 그 출처를 통해서는 1차 문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인용문 자체가 오탈자를 지니고 있는데, 나중의 논문이 그 오류마저 복제해왔다면, 이는 나중의 논문이 1차 문헌을 직접 참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철현 서울대 교수(종교학)는 "한국에서 고전번역은 대부분 그럴 가능성 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국내에 고대어 독해능력을 갖춘 지식인들이 많지도 않으며, 구할 수 없는 텍스트도 많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산스크리트, 아랍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거의 90%"

가 1차 문헌을 직접 보지 못하고 2차 문헌만을 참고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넷째,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학술논문 작성자가 세미나, 학회 등 공식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다른 사람의 학문적 아이디어를 자신의 생각인 양 인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역시 표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고려대의 한 교수는 "어느 교수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 견해를 물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말한 내용이 그 교수 이름으로 학술지에 실렸다"고 한다. 이런 경우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표절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몇 사람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연구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이 핵심 아이디어를 내놓고 공동 작업이 이뤄지는데, 중간에 빠져나간 구성원이 먼저 이를 주제로 단독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에 신세를 졌다면 윤리적으로는 밝히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연구자를 표절로 몰아붙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박희제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예전 같으면 학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서로 제공하며 활발히 토론했지만, 지금은 남들이 베낄까봐 구체적인 사실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수업시간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논문을 썼다고 할 때, 그걸 표절이라고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그 경

계가 애매하다고 한다. 이에 박 교수는 “그 경계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획일적으로 규정을 만들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섯째의 유형은 ‘출판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학술논문 작성자가 출판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제자나 석·박사 학생 등의 논문이나 보고서)을 일부 수정하거나 그대로 또는 종합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공동저자로 발간하는 단행본이나 발표하는 논문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절 시비와 관련하여 발각될 위험도 없고, 적발되더라도 물증 확보가 어려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제자의 수업발표문, 학술대회 논평문, 인터넷 자료 등을 출처 언급 없이 사용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표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식의 학술대회 논평문을 참고할 때에도 윤리적으로 그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되지 않은 특정 출처를 베낀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라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박희제 경희대 교수의 의견이다.

이처럼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절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준을 획일적으로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유재원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표절 규정은 권면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경고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선 학술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표절 규정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행정학회의 표절규정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수행한 기초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표절의 유형들 가운데 대표적인 2가지 유형, 즉,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및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만을 표절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상기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ttp://www.kapa21.or.kr/home/rule4.asp?page=intro_07).

3. 학술논문 작성의 인용방식 비교 분석

3.1 인용의 정의

본 논문에서 인용(引用, quotation; citation)은 학술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인용이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학술논문에서 인용이란 자기의 이론 전개에 다른 연구자의 이론 및 문헌을 끌어들여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 가운데 문장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여 자신의 논문 속에 삽입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에 의하면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씀’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민중서림편집국 2003, 2035). 이에 대해 김영민과 이수상은 인용에 대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남의 말이나 글’, ‘필요한 부분’, ‘끌어다 씀[쓰다]’이란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김영민 1996, 63-64; 이수상 1999, 30-31).

첫째, ‘남의 글이나 말’은 어디서 끌어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인용문헌의 출처를 의미한다. 그 출처가 원문, 번역문, 저작물 속의 인용문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용문헌의 출처가 번역문이나 저작물 속의 인용문이라면, 학술논문 작성자는 아마도 번역자나 저작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용한 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술논문 작성자가 원문을 찾아 인용하였다면, 보다 성의 있는 인용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필요한 부분’은 무엇을 끌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술논문 작성자는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고자 원문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인용한다. 그러한 부분이 단어, 개념, 구절, 문장이든 간에 그 판단은 학술논문 작성자의 필요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학술논문 작성자가 자칫 잘못 사용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 왜곡이란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셋째, ‘끌어다 씀’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끌어와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의 방법을 말한다.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동기나 관행에 따라 다양한 인용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들이 제각기 출판하고 있는 논문작성법 등의 인용과 관련된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2 인용의 방식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인용방식은 국가마다 학문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 인용방식은 (1) 인용주를 표기하는 방식과 (2) 인용문헌에 대한 서지기술 방식 및 (3)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많은 학술지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식을 채택하여 각각 고유한 인용방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용방식은 이수상의 논문을 참조하여 구분하고 추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문 속에 인용문의 삽입 방법, 둘째, 인용주의 위치나 서지기술형식, 셋째, 인용주와 참고문헌의 관계 표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이수상 1999, 31-33).

첫째, 본문 속에 인용문(인용구절)을 삽입하는 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문장부호(' ' 또는 “ ” 등)를 사용하여 본문의 필요한 부분에 인용문을 삽입하거나, (2) 본문 속에 삽입할 인용문의 분량이 많으면 별행으로 들여쓰기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3) 인용문을 재해석하여 본문 속의 문장으로 소화시켜 문장부호나 인용문으로 표시하지 않고 처리하기도 한다. 우선,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본문의 필요한 부분에 인용문을 삽입하거나, 본문 속에 삽입할 인용문의 분량이 많으면 별행으로 들여쓰기를 할 경우에 인용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만약 인용문이 문장 논리나 오탈자가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경우에 왜곡

인용을 피할 수는 있지만, 문맥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학술논문 작성자가 인용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인용문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약속된 문장 부호를 표기하여 인용할 수 있다. 또한 학술논문 작성자는 외국문현을 인용할 때에도, 외국어 그대로 인용할 것인지 혹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여 인용할 것인지, 나아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여, 팔호 안에 외국어로 있는 그대로 병기한 후, 인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용문을 재해석하여 본문 속의 문장으로 소화시켜 문장부호나 인용문으로 표시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에는 왜곡인용과 표절의혹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학술논문 작성자가 대개 인용문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문장부호가 없이 본문에 사용함으로써 인용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인용주(註)의 위치나 인용문현 서지기술형식은,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1) 인용 서지를 인용주 또는 주기(註記) 형식으로 표시하는 위치 및 (2) 인용문현에 대한 서지의 기술형식을 포함한다. 우선, 인용주에는 내용주(해설주, explanatory notes)와 참조주(인용문현의 서지 표시, reference notes)가 있으며, 둘다 적당한 위치에 표시된다. 이와 같은 인용주는 기입되는 장소에 따라 두주(頭註, 본문 위에), 방주(傍註, 본문 측면에), 할주(割註, 본문 중간에), 그리고 각주(脚註, 본문 아래에), 미주(尾註, 본문 마지막에) 등으로 구분된다. 예전의 세로짜기 글쓰기 관행에서는 두주, 방주, 할주 등을 사용하였으며, 최근과 같은 가로짜기 형식의 글쓰기에서는 대체로 각주와 미주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인용문현 서지기술형식은

피인용 대상이 되는 인용문현 즉, 단행본, 논문, 남의 말 등의 특정 부분(또는 전체)에 대한 서지의 기술형식이다. 대체로 인용문현은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 페이지’와 같은 간략한 서지요소로 기술되며, 다른 문현서지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서 표시되고 있다. 즉, 인용문현은 너무 많은 서지요소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서로 다른 인용문현들을 상호간에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학술논문 작성 과정에서 서지정보의 기술은 글쓰기세계에서 표준화된 형식이나 관례를 따르게 되는데, 그 형식과 관례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① 형식 매뉴얼(style manual)이라고 불리는 매뉴얼에 준하는 경우이다.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활용 중인 매뉴얼로는 CSM(Chicago Style Manual) 형식,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형식,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형식, CBE(Council of Biology Editors) 방식,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방식, AIP(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방식, 하버드(Harvard) 방식, 밴쿠버(Vancouver) 방식 등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논문이나 저작물의 출판을 담당하는 단체(학회, 협회, 연구소 등)나 출판사에서 별도로 규정한 작성지침을 따르는 경우이다. ③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을 고집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인데, 그렇더라도 서지형식의 표시에 일관성이 없거나 독자가 판독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삼성의 학정보센터에서도 또 다른 각도로 학술논문 투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용방식들을 크게 ‘저자-연도 방식’과 ‘번호 방식’ 및 ‘각주 방식’으로 구분·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http://203.252.63.3/smimc/_smimchome_re/report/4-4.htm). 이러한 본문에서 인용주를 표기하는 전술한 3가지 방식은 학문 분야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고, 표기 방식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연도 방식은 미국심리학회의 출판 양식에 따른 것으로 APA방식이라 한다. 이 양식은 주로 사회과학 분야와 생물학·식물학·지구과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논문의 끝부분에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참고문헌 목록을 정리하고 본문에서는 인용한 출처의 저자와 연도를 기입함으로써 목록에서 필요한 문헌의 출처를 찾도록 하는 방식이다.
- (2) 번호 방식은 응용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본문에 번호를 붙여 본문상의 인용번호와 참고문헌 목록의 번호를 일치시켜 참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때 번호는 팔호 안에 넣거나 위첨자로 표기한다.
- (3) 각주 방식은 역사, 철학, 신학 등의 인문 과학 및 예술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며 CSM(시카고)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본문에 위첨자로 번호를 붙인 다음, 페이지 하단에 인용출처를 밝히는 방법으로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인용주와 참고문헌의 관계 표시는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학술논문 작성에서 인용의 표시방법인 인용주와 참고

문헌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위치가 다르고, 기호법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인용주에서는 인용되는 모든 문헌을 표시하게 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참고문헌의 경우에 인용주로 인용되지 않았지만, 참조한 문헌까지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학술논문에서 인용문헌의 수와 참고문헌의 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고문헌 수는 인용문헌수보다 많아질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학술논문에 따라서는 인용주와 참고문헌을 모두 갖고 있는 논문이 있을 수 있으며, 둘 중에 하나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체로 인용주가 참고문헌을 대신하든지, 참고문헌이 인용주를 대신하든지 하는 경우이다. 물론 학술논문들 가운데 인용주나 참고문헌을 갖고 있지 않은 논문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용주나 참고문헌 작성방식은 MLA방식과 APA방식 및 CSM방식이고, 특정 학문 분야별로 사용되는 것은 CBE방식, ACS방식, AIP방식 등이 있다. 또한 의학 분야에서는 하버드방식과 밴쿠버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논문의 인용주와 참고문헌 작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는 김남석·김기진·김수경 등이 저술한 '주·참고문헌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김남석 외 2002) 및 김남석 편저의 '학술논문 서지기술 시리즈 I-V'(김남석 2006) 등이 출판되어 유통 중에 있다. 이 자료는 학술논문 작성을 위한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상기 대부분의 형식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

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술논문의 인용주와 참고문헌의 작성 방식도 대부분 전술한 방식들 가운데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식을 채택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각각 고유한 인용방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4. 표절 방지와 올바른 인용 방식

4.1 표절의 사회·문화적 배경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 표절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표절 방지를 위한 어떠한 방책들도 무용지물이 되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적재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 표절 방지를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껴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이며, 일종의 지식 도둑이다. 엄격하게는 법적으로는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이며 민·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표절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문화적 배경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학계에서의 표절이 관행처럼 되어오다가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그동안 경제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근대화 과정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변변한 대학 교재가 없어서 일부 교수들이 일본 미국 등 외국 책을 번역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였지만, 이에 대해 누구도 어

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것 이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때만 하더라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교수로 임용을 받은 학자들은 외국의 선진 학문을 그대로 보급하는 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외국 학자의 책을 베끼건 말건 상관하지 않은 것은 표절이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성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http://blog.joins.com/kwansooko/7630767>).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근대화라는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식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지식인의 중요한 임무는 선진 학문과 기술의 번역과 소개였다. 그 과정에서 후진국이라는 평계를 내세워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 보니 표절에 관대한 문화가 조성되면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이종구, <http://blog.joins.com/mong0815/7651404>)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학문적 겸손을 강조하는 풍토도 표절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테면, "젊은 학자들이 저서를 내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어 은사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스승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인정하면 그제야 스승과 공동 명의로 책을 낼 수 있었다"도 한다. 또한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식의 생각도 표절에 대한 죄의식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익대 방석호(법학과) 교수는 "책이 귀했던 시절에 선비들이 책을 공유하는 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http://blog.joins.com/kwansooko/7630767>).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

지는 학술논문의 작성과 관련하여 표절방지나 연구윤리 확립 문제에 대해 사회·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발전과정에서의 관행적인 표절 풍토 조성으로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라도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수출 및 보호라는 측면에서 표절방지와 연구윤리 확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및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표절시비에 대한 감정적 대처보다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초·중·고교나 대학 및 학계를 대상으로 표절 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초·중·고교나 대학 및 학계,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각각 표절 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확립 및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4.2 표절 방지와 연구윤리 확립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 표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학계 원로 중심으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상기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윤리 확립

을 위한 권고문」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7년 5월 8일 보도 자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과 학회의 연구윤리 교육 실시와 연구윤리 교재 개발 등 자율적인 연구윤리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대학과 학회가 연구윤리 교육 및 학술대회를 실시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 공모를 통해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 키워드는 표절 방지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이며, 이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동일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의 부족 등으로 이러한 키워드들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의 표절 방지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기술적인 면을 다각도로 고려한다면, 너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학이나 정부차원에서 표절이나 연구부정 행위 등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을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소위 미국이나 영국 및 캐나다 등지에서도 표절은 커다란 골칫거리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도둑이 있듯이 학문 세계에서도 표절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에서 표절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한 제재조치

를 취하지만, 동시에 사전에 표절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의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표절방지 교육의 핵심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이를 창작한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표절 방지 교육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교육은 표절을 방지하여 올바른 인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창작자의 창작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나 연구자가 학술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표절 방지와 올바른 인용방법을 한마디로 기술하거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이 문제를 대학이나 정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들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표절 방지나 올바른 인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분 공식적으로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실시하는 사전교육 보다는 거꾸로 표절 방지와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임시방편적인 느낌을 자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의 표절 방지와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유재원 외 2006, 352). 즉, ① 다른 출처에서 6단어(혹은 4단어) 이상을 그대

로 옮겨오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활용할 것. ② 일부 내용을 다른 말로 풀어쓰는 경우 원 출처를 인용할 것. ③ 빌려온 모든 정보에 대해서 원 출처를 명기할 것. ④ 재인용할 경우 원 출처와 함께 제2차 출처도 본문과 참고문헌에 명기할 것. ⑤ 출판되지 않은 소재의 경우에도 원 저자의 배타적인 소유임을 인정할 것. ⑥ 도형, 그림, 표 등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표 1>에서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LBJ School of Public Affairs 2004, 8-11. 재인용: 유재원 외 2006, 352).

4.3 올바른 인용 방식

학술논문 작성에서 올바른 인용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국가마다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절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학계 차원에서 무엇이 표절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인용방식은 표절의 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계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표절을 피하기 위해 학술논문 작성자는 인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정민 서울대

〈표 1〉 학술논문 작성에서 표절을 피하는 방법

주제	표절을 피하는 방법	비고
공동연구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집필한 원문에 원저자를 모두 계재. • 학문적 동료 혹은 심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중요한 아이디어나 공현 역시 밝혀야 함. 	
말 바꾸기 paraphra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에 따르면”, 혹은 “X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의 방식으로 원저자를 인정하고 출처를 본문 혹은 각주(혹은 미주)와 참고문헌에 제시함. 	
인용 c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약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고 출처를 본문 혹은 각주(혹은 미주)와 참고문헌에 제시함. • 인용구 주위 혹은 특정 구/술어 주변에 인용부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각주, 미주, 주석, 참고문헌에 인용문 원본을 제시 • 인용하되 축약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말바꾸기에서 같이, “X에 따르면”, 혹은 “X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의 방식으로 원저자를 인정하고 출처를 본문 혹은 각주(혹은 미주)와 참고문헌에 제시함. • 4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별행 들여쓰기(block quotations)를 사용(MLA 방식), 8개 이상의 줄로 이루어진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할 경우 구역 인용구를 사용(CMS 방식) 	
받아 적기 note-t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대로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를 사용 • 출처를 제시 • 인용문장에서 삭제된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 ‘...’을 사용 • 추가되거나 변화시킨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 괄호 '[]'를 사용 • 본래 원문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오류 다음에 [sic] 또는 [원문대로]를 사용 	
전자 자료 electronic 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문헌에 대한] 출처를 인용(올바른 인용방식을 모른다고 해서 표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인터넷에서 자료의 무단복사(cutting and pasting) 금지 	

교수(언어학)는 “각 학문 분야의 관례에 따라 합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따라 쓰되 따옴표를 써 인용하거나 인용자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더라도 반드시 그 바로 뒤에 원저작자의 이름과 출판연도(출처)를 밝혀주고, 논문 맨 뒤 참고문헌에 그 서지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그리 함으로써 인용된 저작자에게 공(credit)을 돌리는 것이 되며, 자신의 저작도 차후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참고문헌에만 이름을 넣거나 서문 등에 한번 넣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이정민 2007, 79). 즉, 학술논문 작성자가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인용을 통해 원저작자

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술논문 작성자가 글쓰기에서 참조하는 문헌은 특허권과 저작권 및 학술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절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자료는 학술정보의 범주에 속한 문헌일 것이다. 따라서 학술논문에서의 표절 문제는 〈표 2〉에서와 같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아닌 학술정보의 특성이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나와코타로 2003, 204). 학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표절 문제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다루어질수록 학술정보의 활용이 저조하게 되어 학술발전을

〈표 2〉 특허권·저작권·학술정보의 특성

		특허권	저작권	학술정보
특성	존재의 형(形)	물건·서비스의 중간	저작물	정보 그 자체
	전유성(專有性)	사유재	사유재	공공재(클럽재)
	보호의 대상	재산권	인격권+재산권	저자표시정확성(authorship)
	창작의 동기	투기	자기발현	호기심
가치	평가의 대상	기능	표현	사실/기능
	평가의 항목	선취성/신규성/유용성	창작성	선취성 혹은 피인용수
	평가자	국가(특허청)	없음	동료(학회)
	배타성	강함	약함	없음
제도	이념	산업진흥	문화발전 -> 산업진흥	학술발전 -> 사회발전
	정부의 관여	심사	없음	스폰서쉽(sponsorship)
	인지용(認知用) 정보	제도적 DB 보유	없음	전문분야별로 분산
	월경성(越境性)	국별로 부여	국제적	국제적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념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올바른 인용방식은 학계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합의와 학술정보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학계나 정부에서는 이미 몇 가지 올바른 인용 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국내 설정을 감안하여 그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용 방식을 소개하는 매뉴얼들 가운데 개략적으로 구분하면, 인문학은 CSM(Chicago Style Manual) 형식, 언어·문학은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형식, 사회과학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형식, 생물학은 CBE(Council of Biology Editors) 방식, 화학은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방식, 물리학은 AIP(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방식, 그리고 의학 분야는 하버드(Har-

vard) 방식 및 밴쿠버(Vancouver)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용 방식들 가운데 실제 적용에서의 차이점은 〈부록〉에서와 같이 나타나며,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한 가지 또는 2~3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택하여 새로운 방식을 만들 수도 있다(강진령 1997; 김남석 등 2002; 김남석 2006; Fowler · Aaron 1995, 651-692; Rawlins 1996, 421-446; Fulwiler · Hayakawa 1994, 736-799; Achtert · Gibaldi 1985). 다음의 〈부록〉에 나타나는 실례들은 위의 각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개략 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문의 인용주 및 참고문헌의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대한 극히 일부 서지기술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세부적인 내용은 학문 분야별로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확인하거나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 학자나 연구자의 경우에 '표절방지'나 '연구윤리 확립' 및 '올바른 인용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마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며, 국내 학문 후속 세대 역시 마찬가지 환경 속에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절 방지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을 잘못 이해하면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를 갖고 있다. 즉, 표절의 방지가 곧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며, 이는 연구윤리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표절의 문제가 연구부정행위나 연구윤리 확립이라는 개념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표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는 있다. 이러한 노력조차도 가정. 초·중·고교와 대학, 학계, 정부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나라만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표절방지와 올바른 인용 문화의 확립이라는 국내·외적인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학술논문이나 보고서, 심지어 학생들의 보고서 등은 학술 정보를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벼금갈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표절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모두가 표절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술논문의 표절과 관련하여 국내 신문기사나 학술지 논문의 제목들을 검색하면서 주목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최근 이러한 표절 앞에서는 교육부총리, 총장, 국책기관장, 교수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 학회, 정부 차원에서 표절을 포함한 연구 부정 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가 대학차원에서 각 학문별 특성 등을 전공교수들로부터 수렴하여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안)'을 공표하면서 2007년 9월 1일부터의 모든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고려대학교 2007). 하지만, 전술한 한국행정학회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학계에서도 정부나 학술지원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학회 차원에서 조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표절 방지를 포함한 연구윤리 확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마치 불난 집에 여러 대의 소방차가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내며 출동하여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는 것처럼 여겨진다. 불이 나서 진화하기보다는 불이 나지 않도록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우리는 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릴 때부터 수시로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불조심과 소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 왔다. 아마 표절 방지 교육도 이와 같은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 건전한 인용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학술논문 작성에서의 표절시비에 대한 감정적 대처보다는 이와 관련하여 초·중·고교나 대학 및 학계가 스스로 표절 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적절한 교육

을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우선 학술논문 작성과 관련되는 각 주체들이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절의 기준 및 범주를 융통성 있게 정하고, 적절한 적용시점을 명시한 후 보다 적극적으로 표절 방지를 포함하여 연구윤리를 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표절방지와 올바른 인용 문화의 확립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첫째, 학술논문 작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절의 유형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표절방지와 올바른

인용 문화의 확립은 초·중·고교와 대학에서의 사전교육 및 학계와 사회에서의 합의에 의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술논문 작성자나 학계가 서로 다른 학문분야별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제 글쓰기나 학회지 인용규정의 제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용주와 참고문헌의 서지사항 기술이 포함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몇 가지 인용방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문헌에 소개된 원문을 활용하여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학자나 연구자 및 학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진령 편저. 1977.『APA 논문작성법』. 서울: 양서원.
- 고려대학교. 2007.『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 윤리지침(안)』. [online]. [cited 2007.9.6] <<http://www.korea.ac.kr/main/KF6S02T00F00-view.jsp?idx=200709031934270044#>>.
- 곽동철. 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2007년도 전국 국·공립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학술세미나』. 2007년 5월 31일. [광주: 전남대학교], 39-63.
- 김남석, 김기진, 김수경, 방대욱, 오동근, 이승희. 2002.『주·참고문헌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대구: 태일사.
- 김남석 편저. 2006.『학술논문 서지기술 시리즈 I-V』.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김영민. 1996.『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 글쓰기』. 서울: 민음사.
- 나와코타로 지음. 2003.『학술정보와 지적소유권』. 우인하 옮김.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민중서림편집국. 2003.『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제5판. 서울: 민중서림.
- 삼성의학정보센터. “투고규정-Citation style.” [online]. [cited 2007.5.3] <http://203.252.63.3/smimc/_smimchome_report/4-4.htm>.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2006.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대학교육』,

- 144: 78-79.
- 신광영. “표절과 연구윤리.” [online]. [cited 2007.8.14] http://www.krf.or.kr/KHPapp/board_tpl/noti_bodo.jsp?bbs_seq=628&sub=menu_08.
- 유재원, 장지호, 최창수, 최봉석. 2005. 행정학회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행정학회 2005년도 학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V)』. 2005년 6월. [online]. [cited 2007.9.6] http://www.kapa21.or.kr/paper/view.asp?page=pdsall_all&num=1987&pageno=1&startpage=1&s_reg_year=2005&s_pdiv=&s_subject=&s_writer=유재원&s_content=.
- 이수상. 1999.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 표절 그리고 저작권법의 문제. 『도서관』, 54(3): 28-51.
- 이인재. 2007.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정민. 2007. 표절의 검증과 제도 마련. 한국복 사전송권센터. 『2007 저작권 세미나: 한 미 FTA 시대의 저작권 행사 및 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07년 5월 17일. [서 울: 전경련회관], 77-86.
- 이종구. “표절 시비 자주 생기는데 ….” [online]. [cited 2007.8.14] <http://blog.joins.com/mong0815/7651404> [2007.3.3].
- 정일섭. 2006. 이공계 연구윤리를 생각하며. 『대 학교육』, 144: 54-58.
- 정진근. 2007.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복사전송권센터. 『2007 저작권 세미 나: 한 미 FTA 시대의 저작권 행사 및 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07년 5월 17일. [서울: 전경련회관], 57-74.
- 최장순 기자. 2006. 잘못된 관행, 표절의 생태학 ②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교수신문』, 2006. 9. 21.
- “학계표절 왜 없어지지 않나.” [online]. [cited 2007.2.28] <http://blog.joins.com/kwansooko/7630767>.
- 한국행정학회. 2006. 한국행정학회 표절규정. 『대학교육』, 144: 78.
- Achtermann, Walter S. · Gibaldi, Joseph. 1985. *The MLA Style Manual*.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2005. “Statement on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online] [cited 2007.5.11] <http://www.historians.org/pubs/Free/ProfessionalStandards.cfm>.
- LBJ School of Public Affairs. 2004. *A Guide to Avoiding Plagiarism*. ---: LBJ School of Public Affairs. 8-11. 재인용: 유재원, 장지호, 최창수, 최봉석. 2005. 행정학회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학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V)』. 2005년 6월. 347-357. [online] [cited 2007.5.9] http://www.dbpia.com/view/ar_view.asp?pid=891&isid=35823&arid=755538&topMenu=2&topMenu1=#

- Fowler, H. Ramsey · Aaron, Jane E. 1995. *The Little, Brown Handbook*. 6th ed. New 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Fulwiler, Toby · Hayakawa, Alan R. 1994. *The Blair Handbook*. Boston: Blair Press.
- Jackson, Pamela A. 2006. "Plagiarism Instruction Online: Assessing Undergraduate Students' Ability to Avoid Plagiaris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7(5): 418-428.
- Rawlins, Jack. 1996. *The Wright's Wa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Ed. Simpson, J. A. and Weiner, E. S. C.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OED Online*.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online]. [cited 2007.5.9] <<http://dictionary.oed.com/cgi/entry/00181778>>.
- Patience, Simmonds. 2003. "Plagiarism and Cyber-Plagiarism: A Guide to Selected Resources on the Web."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64(6). [online] [cited 2007.5.9] <<http://www.ala.org/ala/acrl/acrlpubs/crlnews/backissues2003/june4/plagiarismcyberplagiarism.htm>>.
- The Owl(Online Writing Lab) At Purdue. 2006. "Avoiding Plagiarism." [online] [cited 2007.5.9] <<http://owl.english.purdue.edu/owl/resource/589/01/>>.

〈부록〉 학술논문의 주 및 참고문헌 작성 방식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방식

〈인용주〉 본문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 (Gilligan 105).

〈참고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Gilligan, Carol. In the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92.
Tiffin, Helen. “Post-Colonialism, Post-Modernism, and the Rehabilitation of Post Colonial History.”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3.1(1988): 69-81.

CSM(Chicago Style Manual) 방식

〈인용주〉 본문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⁷

⁷. Carol Gilligan, In the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92), 98.

〈참고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⁷. Gilligan, Carol. In the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92.
⁷. Tiffin, Helen. “Post-Colonialism, Post-Modernism, and the Rehabilitation of Post Colonial History.”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3, no. 4(1988): 69-81.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방식

〈인용주〉 본문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 (Gilligan, 1992, p. 105).

〈참고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Gilligan, Carol.(1992). In the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Tiffin, Helen.(1988). Post-Colonialism, Post-Modernism, and the Rehabilitation of Post Colonial History.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3(1), 69-81.

CBE(Council of Biology Editors) 방식

〈인용주〉 본문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7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7)

〈참고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7. Gilligan, Carol. In the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92: 102-110.

7. Tiffin, Helen. Post-Colonialism, Post-Modernism, and the Rehabilitation of Post Colonial History.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5: 69-81: 1988.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방식

〈인용주〉 본문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7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7)

〈참고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7. Gilligan, Carol. In the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92: pp.55-60.

7. Tiffin, Helen. J. Chem. Ed. 1988, 23, 69-81.

AIP(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방식

〈인용주〉 본문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7

One researcher concludes that “women impose … in terms of conflicting responsibilities”(7)

〈참고문헌〉 단행본, 연속간행물

7. Gilligan, Carol. In the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P, 1992), pp.55-60.
7. Tiffin, Helen. Am. J. Phys. 23, 69-81(1992)..

하버드(Harvard) 방식

〈인용주〉 본문

The author has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proposals on the National Service in another paper(Loft, 1991). Other writers have commented on related issues, notably Lane(1992, 1994) and Lewis(1995).

〈참고문헌〉 연속간행물, 단행본

- Annas, G.J.(1997) New drugs f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JM, 337, 435-39.
Grinspoon, L. and Bakalar, J.B.(1993) Marijuana: the forbidden medic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밴쿠버(Vancouver) 방식

〈인용주〉 본문

The author has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proposals on the National Service in another paper(1). Other writers have commented on related issues, notably Lane(2,3) and Lewis(4).

〈참고문헌〉 연속간행물, 단행본

1. Annas, G.J. New drugs f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JM, 1997; 337: 435-9.
2. Grinspoon, L. and Bakalar, J.B. Marijuana: the forbidden medic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